

1. 住宅分讓價原價連動制施行指針中 改正指針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

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중 다음과 같이
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독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철골조
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규
모의 아파트인 경우

제2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강원도, 충청북도, 전라북도, 제주도
지역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(국민주택기
금 지원을 받아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은 제
외한다.)과 대전, 충청남도, 전라남도, 경상
북도, 경상남도 지역에서 건설·공급하는

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규모 주택인 경
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
을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지침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
다.
2.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
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
다.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~2. (생략)	제2조(적용범위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~2. (현행과 같음)

〈해설〉

■ 분양가규제 완화 추진 경위

-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질 좋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, 95. 11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

* 분양가규제 현황 : 20호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엮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'89. 11부

터 원가연동제를 적용

- 분양가 = 택지비 + 건축비

- 택지비 : 공급가격(공공택지), 감정가격(민간택지)

- 건축비 :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(전용 25.7평 15층 이하 168만원)

* 분양가 규제완화 추진경위

- '95. 11 「주택시장 안정대책」에 따라 강원·충북·전북·제주 등 4개도의 중대형 주택과,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공택지 및 자금지원 없이 80% 이후 분양하는 경우 규제폐지
- '97. 7. 1 단독·연립 및 25.7평을 초과하는 철골조아파트 규제폐지

■ 이번에 분양가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을 보면,

- 지금까지 강원·충북·전북·제주 등 4개도의 중대형아파트에(전용 85m² 초과) 대해서만 분양가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,
- 앞으로는 주택보급률이 90%를 넘고 미분양주택이 많으며, 시가와 분양가가 비슷하여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·대구·광주를 제외한 지역의 중대형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게 되었음
- 또한, 중대형아파트에 한해 규제가 폐지된 강원 등 4개도에서는 85m²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도 규제를 폐지하되,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(60m² 이하)에 대해서는,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음
※「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」을 개정하여 '97. 1. 1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부터 적용

■ 이번에 분양가규제를 완화하게 된 배경은

- 90년대이후 매년 60만호 내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집값도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,
- 특히, 지방의 경우는 분양가가 시가와 근접하거나 시가보다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, 미분양적체가 지속되면서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규제를 지속할 실익이 없는 반면,
- 분양가규제 하에서는 주택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와 구조 및 부대시설을 갖춘 질좋은

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함에 따라, 미분양아파트를 양산하고 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므로

-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히 하고 소비자의 수요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시장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규제를 폐지키로 한 것임.

※강원 등 4개도의 경우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결과,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형주택을 확대키로 함.

■ 기대효과

-이번 분양가 규제완화로 민간자율의 폭이 확대되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질좋고 다양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 주택의 질적수준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,

-주택업계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선진형주택을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분위기를 확산 시킴으로써 분양성을 제고하고 자금난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, 주택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주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주택회보